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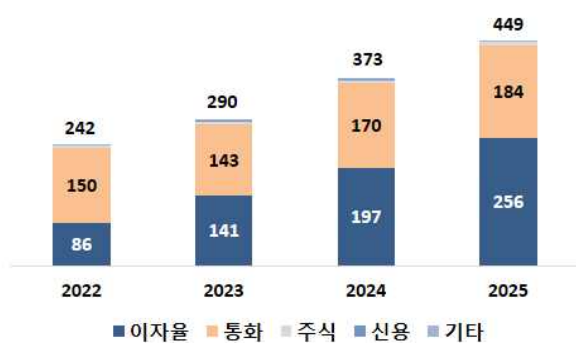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활용 규모가 커지면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및 유지 여부가 손익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IFRS 9이 원칙 중심의 효과성 평가 체계를 도입하였음에도 실무에서 정량적 평가에 의존할 유인이 존재하여 경제적 위험회피 효과와 회계처리 간 괴리가 우려됨. 이에 보험회사는 질적 평가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산업 차원에서는 판단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회계처리 불일치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금리 및 환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파생상품 활용을 확대해 왔으며,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된 금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금리 및 환율 변동성 대응과 ALM 목적으로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 IRS), 통화스왑(Cross-Currency Swap; CCS) 등의 파생상품을 활용하며, IFRS 9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음¹⁾
-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 규모(명목)는 2022년 이후 지속해서 확대되었으며, 특히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의 거래 증가가 두드러짐
-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된 파생상품 평가금액도 2023년 9.5조 원에서 2025년 20.1조 원으로 확대되어, 위험회피회계의 유지 여부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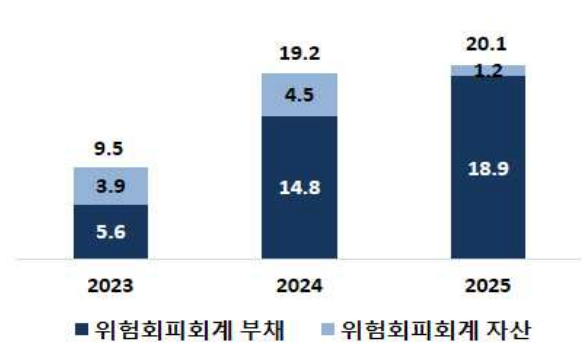
〈그림 1〉 보험산업 파생상품 거래 규모(명목)

(단위: 조 원)



〈그림 2〉 보험산업 파생상품 평가금액

(단위: 조 원)



주: 1) 파생상품거래 계약금액 기준임

2) 생명보험회사 22개사, 손해보험회사 16개사 기준임

자료: 각사, 업무보고서

주: 생명보험회사 22개사, 손해보험회사 16개사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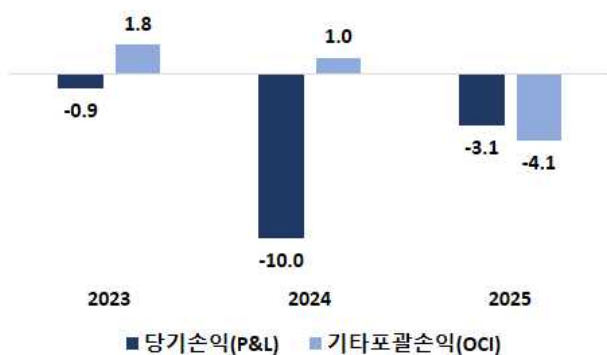
1) 공정가치위험회피는 위험회피대상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에서 상쇄하고, 현금흐름위험회피는 효과적인 부분을 기타포괄손익(OCI)으로 이연함

○ 파생상품 평가손익이 어느 항목에 인식되는지는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와 위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재무제표상 손익 변동성에 영향을 미침

- 파생상품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되어 평가손익이 즉시 당기손익(P&L)에 반영되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면 이를 위험회피대상의 손익과 상쇄하거나 기타포괄손익(OCI)으로 이연할 수 있어 손익 변동성이 완화됨
- 실제로 보험산업의 파생상품 평가손익 규모는 2023년에 비해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나, 이것이 당기손익 변동으로 이어지는지는 위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2024년 파생상품 평가손실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대부분 통화 관련으로 위험회피대상인 외화자산의 환산 이익과 당기손익에서 상쇄되었음
 - 반면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은 위험회피대상인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효과가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어 당기손익에서 상쇄되지 않으며, 위험회피회계의 유지 여부에 따라 손익 변동성이 좌우됨

〈그림 3〉 생명보험 파생상품 평가손익 인식 항목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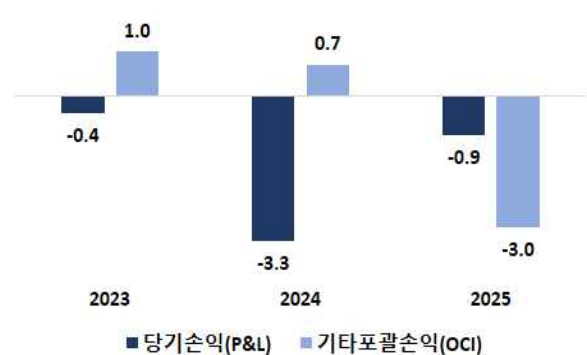
(단위: 조 원)



주: 생명보험회사 22개사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림 4〉 손해보험 파생상품 평가손익 인식 항목별 현황

(단위: 조 원)



주: 손해보험회사 16개사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IFRS 9은 위험회피의 효과성을 원칙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 정량적 평가에 의존할 유인이 존재하여 경제적 위험회피 효과와 회계처리 간 괴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IFRS 9은 과거의 일률적인 정량 기준(80~125%)²⁾을 폐지하고, 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 간 경제적 관계 및 위험회피비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원칙 중심 체계로 전환하였음
- 다만 위험회피회계 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보험회사에 있고 질적 판단은 검증 과정에서 판단의 근거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실무에서 검증이 용이한 정량적 평가에 의존하게 될 유인이 존재함

○ 한편 정량 지표의 변동이나 일시적 이탈만으로 위험회피 관계의 실패 여부를 판단할 경우, 경제적 위험회피 효과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될 수 있음

2)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또는 현금흐름) 변동액을 위험회피대상의 회피대상위험에 기인한 변동액으로 나눈 비율로, 과거 IAS 39는 이 값이 80~125% 범위에 들면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함

- 이 경우 파생상품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그대로 반영되어,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경영 성과와 회계상 성과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보험회사는 IFRS 9의 원칙 중심 취지에 부합하도록 질적 평가 및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의 만기 및 기초자산 등 핵심 조건이 유사한 경우에는 이러한 경제적 특성을 중심으로 질적 평가를 수행하고 위험회피 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 지정 시점에 금리와 환율이 크게 변동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정량 지표가 어느 범위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를 산출해 둘 필요가 있음
- 지표가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변동 원인을 요인별로 분석함으로써, 경제적 관계가 실질적으로 훼손된 것인지 일시적인 시장 요인에 따른 것인지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예를 들어, 통화스왑을 활용한 외화자산 위험회피에서는 지표 변동 중 환율 변동에 기인한 부분과 통화베이스스 확대 등에 기인한 부분을 분리하여 분석할 수 있음
- 또한 위험회피 관계의 지정 근거, 정량 지표의 예상 변동 범위, 변동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대응 절차 등을 문서화 체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험산업 차원에서 위험회피의 효과성 판단 사례가 공유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위험회피회계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위험회피 효과성의 판단은 개별 위험회피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참조할 수 있는 선례가 없는 경우 회사와 감사인 모두 보수적인 판단을 하기 쉬움
- 감독 당국과 업계 협의 등을 통해 해석 사례가 축적되면 판단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회계감사 과정에서의 판단 불확실성도 완화될 수 있음
- 특히 정량 지표가 일시적으로 이탈한 사례에서 경제적 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판단한 근거와 그 수용 여부가 공유될 경우, 유사 상황에서의 판단에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음

○ 아울러 보험부채와 파생상품 간 회계처리의 불일치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필요함

- 금리위험 관리에 활용되는 파생상품은 보험부채의 금리위험을 경제적으로 회피하지만, 보험부채를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제약이 있어 그 효과가 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 따라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위험경감회계(Risk Mitigation Accounting; RMA)³⁾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⁴⁾

3) 개방형 포트폴리오의 순위험포지션을 대상으로 위험관리 활동을 회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IASB는 2025년 12월 공개 초안을 발표하였고 2026년 11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임

4) 최우석·노건엽(2026. 1. 19.), 「보험회사의 금리파생상품 활용 현황과 시사점」, 『KIRI리포트』, 보험연구원